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00
----------	------

2016년 7월 19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7월 19일, 이윤희 의원 외 1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7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6년 9월 2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이윤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,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.

한편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관리 시 지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

고,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(안 제9조제5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 발생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수석전문위원 : 김 선 희)

### 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해 주고 대신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현 황

- 수도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(이하 “음수대”라 함)를 설치하고 있으며, 사용 중인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도물을 마시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<sup>1)</sup>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하여 자체 음수대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20% 감면해 주고 있음.

또한,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('15.1.2)한 바 있음.

-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청소 등 위생관리와 단순한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만, 냉온기능 및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.

---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(학교의 종류)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 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4. 특수학교 5. 각종학교

- 한편, 학교의 경우 음수대 위생관리와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전문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서 수행<sup>2)</sup>하고 있지만, 2015년 실시한 학교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된 152대 중 자체 관리 146대(96%), 용역 관리 6대(4%)로 나타나고 있어, 학교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〈음수대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 현황〉

(단위: 대)

구분	계	경미한 고장					중대한 고장			
		소계	파우셋	버블러	버튼	기타	소계	컴프레샤	냉각기	기타
전체	152	116	41	12	59	4	36	8	25	3
자체	146	112	37	12	59	4	34	8	24	2
용역	6	4	4	0	0	0	2	0	1	1

2)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 에서 제외(안 제9조제5항 신설)

-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체 관리보다는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 관리가 음수대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, 일선 학교에서는 직접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,

최근 설문조사<sup>3)</sup> 결과에서도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찬성 260개교, 반대 368개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, 과반수 이상은 아니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음.

2) 2015년 말 기준 자체 관리 778개교, 전문업체 관리 143개교

3) 내용 : 수도요금 20% 감면 없이 아리수 음수대의 유지관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 
 일시 : '16.1.8 ~ 1.29  
 대상 : 음수대 설치 및 수도요금 감면 대상 학교 628개교

-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관리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일선 학교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,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<sup>4)</sup>은 발생하지 않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---

4) 기존 학교 수도요금 감면액에 비해 용역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됨  
학교 당 연간 수도요금 감면액(1,425천원/년) > 전문업체 용역 관리비(1,350천원/년)

##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(이하 “수도조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관리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,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(이하 “수도조례”라 한다) --- ----- -----.</p>
<p>〈신 설〉</p>	<p>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